

# 멀쩡한 가구·가전제품 싹 교체...북구의회 '호화판 논란'

의회 청사 리모델링 끝내고  
비품 구입에 1억8600만원  
의장석 1400만원짜리로 바꾸고  
의원실마다 700만원씩 들여  
2인 1실 의원실도 1인실로 바꿔  
의회는 "조달 구매로 문제 없다"

최근 리모델링을 실시한 광주시 북구의회가 '호화판'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가구·전자제품 등을 버리고 수백만원짜리로 교체하는가 하면, 2인 1실로 사용하던 의원 사무실도 혼자 쓸 수 있도록 넓혔다. 근무 공간이 비좁아 청사 외 별도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결재를 받기 위해 횡단보도를 4번 건너는 북구 공무원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광주시 북구의회가 최근 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끝내고 의원실 20개와 본회의장 등에 새로 교체한 가구·전자제품 등 구입비는 1억 8600만원. 15억 8900만원이 들어간 청사 리모델링비 외에 별도로 들어간 비용이다. 20명의 의원 개인 집무실에 설치된 가구·전자제품 비용으로 9000만원을 넘겼다.

기초위원이 쓰는 책상으로 110만원짜리를 14개 구입했다. 이 책상은 북구의회가 조달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역용 가구' 중 최고급이었다. 20명 중 의장·부의장·상임위원(4명) 등은 사무실이 더 큰 점 등으로 기존 집구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25일 '의회 환경개선(리모델링)사업'의 일환인 리모델링이 끝난 광주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는 1600여만원 상당의 의장·사무국장석(왼쪽) 설치됐고, 기초의원 개인 집무실에는 개당 11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중역가구 책상이 놓여있다.

45만원짜리 사무용의자 14개(630만원)를 구입하는 것 외에 책장(58만원), 회의용탁자(45만원)도 14개씩 구입했다. 책장 구입하는 데 812만원, 회의용 탁자 비용으로 630만원을 썼다.

의원실마다 1개당 18만원짜리 회의용 의자 6개씩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1512만원을 들었다. 여기에 프린터 비치대(22만원), 간단한 다과·음료 등을 넣어놓는 캐비닛도 16만원짜리를 구입해 14개 의원실에 집어넣었다.

사무용품도 새것으로 바꿨다. 문서 파쇄기(46만원짜리 7대), 벽걸이 TV·거치대 7대(32인치) 195만원, 냉장고 7대(203ℓ) 238만원, 공기청정기 7대에 490만원, 레이저 프린터 7대(210만원)를 썼다.

컴퓨터는 20명 의원들 모두 바꿔주면서 1840만원을 들였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모니터·복사기 등으로 880만원을 썼다.

의원 1인당 700만원이 넘는 돈을 가구·전자제품 교체비용에 쓴 것이다. 멀쩡한 비품을 버리고 교체한 데 따른 비판 지적이 나올만해도, 북구의회는 "조달 구매로 구입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본회의장 내 의장석과 의회사무국장 자리는 1678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본회의장 내 의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의 책상을 바꾸는 데만 1480만원을 썼다. 맞춤 제작에 옷칠을 해 비싸다는 게 북구의회 설명이다.

북구의회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2인 1실로 사



용하던 의원 사무실도 1인실로 바꿨다. 개인집무실이 없었던 기존에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 대화를 나누는 데 불편했다는 의원들 요구를 반영했다. 하지만 비좁은 청사 내 공간이 없어 북구 시설관리과 직원들의 경우 청사 맞은편 상가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4개 횡단보도를 건너 결재를 받으러 오가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이상선 사무총장은 "이게 북구와 광주의 현실"이라며 "비리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징계 등의 부재 뿐 아니라 이들을 공천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광관도 한몫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말 안듣는다며 원아들 학대 전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교사 A(여·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여·57)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2~3살 난 원아 5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 '식사 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발길질하거나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B씨가 아동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학대를 여러 차례 일삼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소방차 비켜주기는커녕...되레 막아서는 차량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해보니  
스피커로 호소해도 '나몰라라'  
성숙된 광주 시민 의식 아쉬워

비켜주기는 커녕, 멈춰서고 막아서는 차량들로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진땀을 뺐다.

25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소방서에서 광산구청·송정매일시장·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소방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 이날, 광산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 4대는 출발 직후부터 버티고 있는 차량에 발목 잡혔다.

소방차가 차량 앞에 '길 터주기 훈련중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이 수십대였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소방차 이동 차선으로 넘어와 멈춰섰고 시내 버스는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승객들의 승하차를 유도하면서 소방차 이동을 막아섰다.



2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매일시장 일원에서 광주광산소방서 소방관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있다.

광산구가 훈련 지원을 하겠다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스피커를 시장 주변에서 줄기차게 틀었지만 꿈틀거리는 차량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세의 기적'은 커녕,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들만 가득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동행한 소방차 행렬은 정작 훈련이 절실한 시장 안으로 진입하지도 않고 시장을 뱅 돌려 돌아보는 수준에 그쳤다. 소방서관계자는 "시장 안에서 길 터주기 훈련한다고 하면 상인들 민원 때문에 큰일난다"고 손사래를 쳤다.

기적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도로변 파라솔과 가판대를 치워야하는 등 훈련으로 불편해하는 상인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불과 10분 거린 2km 구간을 '형식적'으로 돌고 소방서로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가량 걸렸다.

박성철 하남119안전센터 소방장은 "화재현장 출동 시 길 터주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고 출퇴근길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댓글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